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회장(오른쪽 두 번째)이 강원도 감사위원장 등과 만나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강원도 “신기술·특허공법, 계약액 30%미만 적용”

강원도가 도내 관급공사 발주 시 신기술·특허 공법을 계약금액의 30% 미만으로 적용할 것을 검토한다.

과도한 특허공법 적용으로 기술사의 무리한 하도급계약 요구 등 각종 부작용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21일 도 건설업계에 따르면 박완재 강원도 감사위원장은 지난 20일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회장과 만나, 신기술·특허 공법 공사 축소 요청에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 관급공사엔 시설물의 성능 개선, 공기 단축 등의 이유로 공사 시 신기술 활용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신기술 적용 사례가 급증하면서 신기술 보유업체의 유착비리 발생 우려, 하도

급분쟁 발생 우려, 원도급사 역할 위축 등의 각종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이에 오 회장은 박 감사위원장에게 이 같은 애로사항을 설명했고, 도 차원에서 가능하면 신기술·특허 공법을 계약금액 대비 30% 이하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감사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와 수시 회의를 열어 감사정책과 감사계획,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도회는 계약심사 대상금액 대폭 상향조정 또는 계약심사 결과 공개를 통한 지자체 계약심사제도 운영 개선과 사업 발주 시 시공·설치가 수반되는 사업은 반드시 건설공사로 발주해 안전사고 없이 견실 시공할 수 있도록 협조도 요청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

## 2분기 건설수주, 지난해보다 5% 감소

광주·대전·세종은 세자릿수 증가... 지역별 양극화 여전

올해 2분기 전국 건설수주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가량 줄어들었다.

광주와 대전, 세종은 세 자릿수 수주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일부 지역은 강력한 부동산 규제 여파로 건축수주가 크게 줄어들면서 두 자릿수 내림세를 보이는 등 지역별 양극화가 여전했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2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2분기 전국 건설수주는 1년 전과 비교해 4.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건설수주는 지난해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이후 올해 1분기(-4.2%)와 2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통계청 측은 공장·창고 등 건축수주가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하고 발전과 송전, 토지조성 등의 부진으로 토목수주가 12.1% 줄어든 탓으로 분석했다.

지역별 수주 양극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광주(297.3%)와 대전(229.4%)

은 지난 1분기에 이어 두 분기 연속 두 자릿수 이상 증가세를 이어갔다. 세종 역시 124.2% 늘었다.

통계청은 광주는 사무실 및 점포, 대전과 세종은 주택 수주가 증가한 것이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한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대구(97.2%), 강원(62.8%), 전남(42.7%), 제주(25.2%), 부산(1.2%) 등도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해 건설수주가 증가했다.

반면 울산(-62.3%), 전북(-57.6%), 경북(-57.1%) 등 9개 시·도는 주택, 도로·교량 등의 수주가 줄면서 전체 수주도 감소했다.

특히 서울(-19.8%)은 지난해 3분기 이후 4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민간부문은 재건축 등 규제와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주택부문의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며 "예타면제사업과 생활형 SOC 예산을 적시에 반영해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현기자 jh@

## 도급액 1억 미만 계약변경, 발주자에 통보 안해도 돼

앞으로 도급금액 1억원 미만 또는 하도급금액 4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계약 변경사항은 발주자에 통보(건설공사대장)하지 않아도 된다. 또 시공능력평가에 등급자제 실적 및 민간공사 일체형 작업발판(가점)이 반영되고 하도급지급보증서 교부기간도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로 현실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활력 제고방안을 통해 건설업계 및 현장에서 제기한 애로 해소를 위한 26가지의 규제 개선 및 완화 과제를 비롯해 적정 공사비, 적정 SOC 투자계획 등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이 중 국토부 및 건설법 관련 주요 규제 개선 사항을 담았다. 우선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를 확대하고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업종 범위와 허용 항목을 확

하도급 4000만원 미만도 면제  
건설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 확대

관급자제도 시평에 실적 반영

대했다. 건설사업자가 다양한 업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실 이전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인정하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 기술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에 들어간 경우에는 3명 이상으로 제한했던 기술능력 기준을 2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또 경미한 계약내용 변경 시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절차를 개선했다. 지금은 금액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모든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도급금액 1억원 미만이나 하도급

4000만원 미만의 변경사유는 통보를 면제하기로 했다.

시공능력평가도 개선한다. 지난 4월부터 추진 중인 건설현장 추락사고 안전대책의 후속조치로, 민간건설공사 현장에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을 설치한 경우 신인도 평가금액을 가산하기로 했다. 또 공공공사에서 발주자가 공급하는 관급자제도 시공능력평가에 실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기한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현실화하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직접지급 합의서 작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오는 9월 30일까지 관계기관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